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60
----------	-------

발의연월일 : 2026. 7. 9.

발 의 자 : 권향엽 · 이재정 · 김원이
김성범 · 박해철 · 정일영
이건태 · 최민희 · 황정아
손명수 · 이용선 · 장종태
문대림 · 임미애 · 김문수
박용갑 · 김 윤 · 이수진
이광희 · 정진욱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은 그 특성상 진상규명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진상이 밝혀진 때에는 이미 재심청구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폭력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

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폭력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명예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 단서 신설 등).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의”를 “재심본인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이하 “재심본인”이라 한다)

4. 재심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다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의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 재심본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425조 중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가”를 “재심본인이”로 한다.

제432조 단서 중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의”를 각각 “재심본인의”로 한다.

제438조제2항제2호 중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가”를 “재심본인이”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424條(再審請求權者)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再審의 請求를 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u>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u></p> <p>3. <u>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의 法定代理人</u></p> <p>4. <u>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가 死亡하거나 心神障礙가 있는 境遇에는 그 配偶者, 直系親族 또는 兄弟姉妹</u></p>	<p>第424條(再審請求權者)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이하 “재심본인”이라 한다)</u></p> <p>3. <u>재심본인의</u>----- -----</p> <p>4. <u>재심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다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의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 재심본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u></p>
<p>第425條(檢事만이 請求할 수 있는 再審) 第420條第7號의 事由에 依한 再審의 請求는 <u>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가 그 罪를 犯하게 한 境遇에는 檢사가 아니</u></p>	<p>第425條(檢事만이 請求할 수 있는 再審) ----- -----<u>재심본인</u>----- -----<u>인</u>----- -----</p>

면 하지 못한다.

第432條(再審에 對한 決定과 當事者의 意見) 再審의 請求에 對하여 決定을 함에는 請求한 者와 相對方의 意見を 들어야 한다. 但,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의 法定代理人이 請求한 境遇에는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의 意見を 들어야 한다.

第438條(再審의 審判) ① (생략)

② 다음 境遇에는 第306條第1項, 第328條第1項第2號의 規定은 前項의 審判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가 再審의 判決前에 死亡하거나 回復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으로 된 때

③ · ④ (생략)

-----.

第432條(再審에 對한 決定과 當事者의 意見) -----

----. --재심본인의-----

-----재심본인의-----

-----.

第438條(再審의 審判)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재심본인이-----

③ · ④ (현행과 같음)